

제 1 교시

문제-해결 1

성명

수험 번호

홀수형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카르텔 혹은 담합이라고 불리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제하는 행위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릴 경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제도는 미국의 카르텔 규제 제도의 영향을 주로 받아 왔다.

<2>미국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된 카르텔 규제 법리는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뉜다. ‘당연 위법의 원칙’은 가격 합의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 제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목적이거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가격 담합, 물량 담합, 입찰 담합, 시장 분할 등이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반면, ‘합리성의 원칙’은 거래 제한의 목적이거나 의도,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합리성의 원칙’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합작 투자 협정이나 공동 연구 개발 협정과 같은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3>어떤 행위에 대해 ‘당연 위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거래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원고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거나 시장 점유율 등의 시장 지배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사법적 자원이 절약될 수 있다. 정부나 원고는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만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엄밀히 입증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거래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심사 방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 주므로 법 집행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4>‘당연 위법의 원칙’은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 법적 판단의 기본이 되는 ‘합리성의 원칙’에 근거한 법 집행 과정을 거치면서 귀납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이다. 일정한 유형의 행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복잡한 심사 없이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외적인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위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5>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미국에서처럼 특정 행위에 대해 ‘당연 위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면밀한 검증 없이도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법 실무에서는 사업자들의 어떤 공동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이라는 법률요건에 따라 경쟁 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이원적 심사 방식의 장점을 취할 여지가 없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공동 행위를 가격 담합 등 명백히 경쟁 제한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경성(硬性) 공동 행위와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연성(軟性) 공동 행위의 두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법 실무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경성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분석과 같은 간단한 입증 방식만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지만, 연성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분석을 통한 엄격한 입증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증의 엄밀성을 달리하는 두 가지 유형의 공동 행위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카르텔 규제의 이원적 심사 방식을 어느 정도 변형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해: 예측하기와 채워주기& 예측 못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

<독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림 => 정상적인 작동이, 이익 ↓, →공정거래법에서 막기  
미국의 카르텔 규제 제도의 영향

<예측>  
미국의 카르텔 규제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즉 인과  
들의 공동점과 차이점 즉 비교 대조  
그래서 어떻게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논증

<이후 독해>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 : 판례법  
당연 위법 VS 합리성 (예측하지 않은 비교 대조 바로 정리)  
가격 합의, 면밀한 분석 X, 바로 위법 판단, 가격 담합, 물량 담합, 입찰 담합, 시장 분할  
VS  
의도와 목적, 효과를 검토, 개별적으로 판단, 합작 투자 협정, 공동 연구 개발 협정, 자체만으로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사법적 자원의 절약이 가능 VS 엄밀하게 입증하면 된다.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귀납적 발전 VS 원래 원칙

예외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감수할 수 있는 범람이다.

VS 성문법 주의(트디어 예측한 구조가 등장한다)의 우리나라

우리 나라의 규제제도

미국처럼 당연 위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당연 위법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미국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경쟁 VS 연성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정하게 수용되는 것, 인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범람을 통해서 경쟁 제한 등을 해결한다.

1. 위 글에 제시된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 ② 이원적 심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판례법주의에 기초한 귀납적 결과물이다.
- ④ 법 집행 시 전체적으로 비용의 소요가 많아진다.
- ⑤ 정부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진다.

답: 4번 / 3문단 / 사법적 자원이 절약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선지/ 근거

1번: 3문단 /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다.

2번: 4문단 / 당연 위법 원칙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3번: 2&4문단 / 4문단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5번: 3문단 / 정부와 원고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진다.

2. 위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연 위법의 원칙'은 '합리성의 원칙'보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더 고려한다.
- ② '당연 위법의 원칙'의 적용은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줄여 준다.
- ③ '당연 위법의 원칙'은 '합리성의 원칙'보다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부족하다.
- ④ '당연 위법의 원칙'은 '합리성의 원칙'에서라면 합법으로 판단할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 ⑤ '당연 위법의 원칙'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가격 담합 같은 행위가 합작 투자 협정 같은 경우보다 시장에 미치는 해악 여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답: 1번 / 3문단 /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법 자원의 절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적절하지가 않다.

4번 /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적절하다 다만 시장경제의 효율성이라는 말은 내포가 들어간 것이기에 글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개념을 구분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지/ 근거

2번: 3문단& 5문단 / 법 집행 기관의 판단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3번: 2문단 / 합리성의 원칙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판단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는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당연 위법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람은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4번: 4문단 / 당연성 위법의 따라서 예외적인 판단의 오류를 인정한다. 다만 이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위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번: 2문단 /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을 비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당성 여부 즉 해악 여부가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보 기>

(가) 자체 저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형 정유사들이 정유하는 즉시 시장에 석유를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났고, 3개의 대형 정유사들은 유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합하여 소형 정유사의 잉여 석유를 사들였다.

(나) 자동차 부품 개발 사업자들은 과잉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이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기술 개발을 방해하여 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자, 프로젝트 수주 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① 미국에서 (가)에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대형 정유사들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② 한국에서 (가)에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형 정유사들의 공동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
- ③ 미국에서 (나)에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④ 한국에서 (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⑤ 한국에서 (가)는 개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나)는 개별 심사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보기 문제는 보기 혹은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보기 혹은 글의 관점에서 어디까지 받아드릴 수 있는지

가 가격 담합 나 입찰 담합 등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살피는 것

답:

선지/ 근거

1번- 2&3문단/ 당연 위법의 원칙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번-한국에서는 기본이 개별적인 고려이고 다만 효율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정차만 고려하는 형태로 일부 수용된다고 선술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것은 단언하기 어렵다

3번: 2문단/ 합리성 원칙에서는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볼게 된다. 따라서 제한의 의도가 없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

4번: 나가 연결인지 경쟁인지 미리 알아야 가능한 선지이다

5번: 모두 개별 판단의 대상이 기본이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해결(처음부터)

<1>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영토만이 아니라 서구 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들을 통해 식민지의 문화와 정신까지 수탈했다. 그 이데올로기들은 식민 지배의 과정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형태로 전파되었다. 역사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근대 역사학' 또한 식민 지배 정당화의 도구 역할을 하였다. 근대 역사학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산된 담론들을 식민지의 근대적 교육 기관을 통해 유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의 역사를 구성하여 역사에 관한 식민지인의 사유 방식까지 지배했다.

<2> 하지만 제국주의가 남긴 정신적 상흔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결과, 이제 서구의 역사 역시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라,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비서구 문명도 서구 문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구 문명의 여러 요소는 오히려 비서구 지역에서 전파되었다는 점 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써 서구 중심주의가 근본적으로 극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명 담론에 대해, 그리고 그 담론에 수반하는 '근대성'과 '진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 근원적 재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3> 근대 역사학의 핵심에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깔려 있다. 역사주의의 핵심은 '진보'라는 개념, 그리고 진보의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즉 역사는 시간과 함께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주의적 사유에 따르면, 시간은 늘 역사적 진보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질적이고 비어 있는 시간'이다. 그리하여 근대 역사학은 '공간의 시간화' 전략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동질적인 시간상의 위치 측정 기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전'의 시간(전근대)과 '지금'의 시간(근대)을 '진보'라는 개념으로 연속시키면서 각각의 시간에 비서구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를 배치했다. 즉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를 문명 상태로 전환할 사명을 가진다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 주장의 바탕에는 서구와 비서구 모두 단선적 시간 위에서 동일한 역사적 진보 과정을 밟는다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4>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이 위계적 구조로 인해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서만 아니라, 각 국가와 사회 내부에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회 집단들 간에 '발전의 불균등'이 재생산되었다. 즉 한 사회 내부에서도 이른바 근대적인 발전에 뒤쳐져 있다고 규정된 집단 -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농민 - 은 여전히 전근대를 살아가는 후진적 존재로 간주되면서 주변화되고 배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근대적인 시간 안으로 편입될 것을 강제당해 왔던 것이다.

<5> 그러면 서구 중심주의적 근대 역사학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단순히 비서구적 공간도 문화적 고유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서구와 동일한 역사적 진보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상이하고 이질적이며 '환원 불가능한' 역사적 시간들이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

금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역사들은 근대의 서사와 권력 관계에 편입되지 않는 역사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적 시간으로 포섭할 수 없는 '이질성'이 역사적으로 현존함을 인정하고, 근대가 갖는 보편성이나 동질성을 균열시킬 수 있는 그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독해: 예측하기와 채워주기 & 예측 못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

<독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 식민지의 문화와 정신까지 수탈

근대 역사학: 서구 기반의 담론을 유포 ⇒ 식민지의 역사 구성 ⇒ 식민지의 사유 방식 지배

근대 역사학은 과학적인 지식의 형태로 인식될 것이다.

<예측>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산된 담론들이 식민지 역사를 구성하는 것

이로 인해 식민지의 사유 방식까지 지배되는 문제가 등장하였다

뒤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할 것이다(문증)

<이후 독해>

다른 관점이자 해결책: 서구의 역사 역사 한 범위에 불과하다

동등한 가치, 서구의 요소는 비서구에서 전파된 것도

역전히 문제 즉 서구 중심주의의 근본적인 극복

근대성과 진보, 문명 담론을 재성찰할 필요가 있음이 결론으로 도출

이러한 근대성과 진보, 문명 담론의 재성찰이 결국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예측하지 못한 스키마/ 개념정의, 구성): 역사는 시간과 함께 발전

'결국 이러한 사유방식에 대한 재성찰이 해결책이 될 것'

시간은 동질적 비어있는 시간

공간의 시간화

이질적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동질적인 시간 상의 위치 측정 기술로

전근대 근대, 진보 등을 활용한 배치

결국 기존의 인식 즉 재성찰 이전에는 이러한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의 존재이다

이러한 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성찰이 등장할 것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내부에서도 물리적으로 동일한 지금의 시간에서도

발전의 불균형과 편입의 강제가 결과로 도출되는 것

더더 예측한 해결책이 등장하게 됨

비서구적 공간도 문화적 고유성 or 서구와 동일한 역사적 진보를 밟아 나갈 수 있음은 해결책 x

환원 불가능한 역사적 시간들이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것, 즉 두 가지 기준점의 충돌을 전제

동질적인 판단의 잣대를 거부하는 것

근대의 서사와 권력 관계 편입x

이질성의 수용

c) 만점을 위한 이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설정해서 이해하자면 일방향의 화살표에 비서구와 서구를 놓았다면

이와는 달리 한 점 위에 이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대상들을 놓는 것

4.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① 근대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한 사회 내부의 전근대적 계층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근대 역사학의 '공간의 시간화' 전략은 서로 다른 지역의 역사적 사건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한다.
- ③ 근대 역사학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합리성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
- ④ 역사주의적 사유는 공간의 차이와 시간의 추이를 환원 불가능한 별개의 것으로 상정한다.
- ⑤ 역사적 시간을 위계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성으로 '문명화 사명' 이론이 등장하였다.

답: 2번/ 3문단/ 이질적인 공간을 전근대와 근대 등의 단일하고 단선적인 기준으로 배치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대 역사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선지/ 근거:

1번: 5문단/ 근대역사학의 한계는 이질성의 수용이자 환원 불가능한 시간을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준에서 전근대적 계층 역시 환원 불가능한 역사적 시간이자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3번: 1 문단/ 근대 역사학 역시 이데올로기 혹은 그것이 반영된 것이며 여기에서 동질적이고 비어있는 시간과 근대성과 진보가 성립하는 것이다

4번: 4&5문단/ 역사주의적 사유는 환원 불가능한 별개의 것으로 상정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5번: 3&5문단/ 역사적 시간을 위계적으로 보는 것을 바탕으로 전제로 문명화 사명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5.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인도의 차토파다이는 타자에 의해 전유되거나 강탈당한 과거를 거부하고 인도인에 의한 과거의 재현을 강조함으로써 인도 민족주의 역사학의 디딤돌을 놓았다. 그는 조상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인도는 서구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식민지가 되었으나, 후진적 문화를 변형하여 진보의 길로 나아갈 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차토파다이 이후 민족을 능동적 역사 주체로 내세운 인도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인도 역사가 인류의 보편적 진보의 과정을 따라왔지만 식민 지배가 이 과정의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립이 된다면 즉시 자력으로 근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 지배의 정당화 논리를 비판하려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적으로는 식민 정부에 맞서는 것이었지만, ㉠ 역사주의적 사유를 극복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 ① 인도 역사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인도 민족을 변혁하기 위해 과거의 재구성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 ③ 인도가 추구할 역사적 미래는 근대화에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 ④ 인도의 정신적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구 문명과 인도 문명이 다름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 ⑤ 인도 문화의 비합리성을 부정하고 자체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보기 문제: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요 보기 혹은 글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수용 가능

결국 서구적 합리성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이에 기반하여 인도의 발전 가능성을 서술한 것, 즉 기본적인 전제를 뒤집는 것에는 실패한 것이다.

답: 3번/ 3&4문단/ 이 자체는 위계적인 질서에 기반하는 것이고 이에 기반해서 동질적이고 비어있는 시간 직선적인 진보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선지/ 근거:

1번: 보기/ 과학적 연구는 구체화되어 있다

2번: 보기/ 과거의 재구성성은 다양하게 어렵다

4번: 4&5문단/ 서구 문명과 인도 문명의 상이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주의적 사유를 극복하는 데에 적합한 관점이다. 다만 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추론하자면 보기의 입장에 서도 동질적인 시간 상의 특정 기준으로도 들은 그 발전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번: 보기/ 이런 부분 자체는 서구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의 배경이 전제되어야 역사주의적 사유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6. 글쓴이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비서구 지역에 대해 근대성 담론이 강요하는 강압적 획일화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ㄴ. 전근대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역사 주체들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적 시간을 승인해야 한다.

ㄷ. 보편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역사적 시간들을 치환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보기: 글쓴이의 주장,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답: 3번

선지/ 근거:

ㄱ- 4문단/ 비서구 지역, 전근대의 영역에 있는 대상과 지역에 단일한 기준에 기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기에 적절한 주장이다.

ㄴ- 5문단/ 전근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들을 환원할 수 없는 역사적 시간으로 인정하고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것이 이러한 역사적 시간을 수용하는 것이라 이른다.

ㄷ- 5문단/ 이질적인 역사적 시간은 치환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라도 어울리지 않는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측 인과 비교대조/문해

대부분의 서구 열강 식민지들이 독립한 20세기 중반 이후, 빈곤에 대한 국제적 개입은 주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하에 진행되어 왔다. 식민본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관계로 재편되면서, 전자가 개발 원조를 통해 후자를 돕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빈곤에 대한 대응 역시 ‘글로벌’화하고 있다. 빈곤에 대한 개입은 정부 차원을 넘어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NGO와 대학, 종교 단체가 참여하는 전 지구적 교류의 장이 되었고, 그 목표도 세계 각지의 빈곤을 개선하려는 전 지구적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모금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빈곤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글로벌’화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은 규모의 확대 혹은 활동 주체의 다양성을 놓고 볼 때 정부 차원에 치우친 기존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방식에도 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억압적 증여 관계를 낳는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주는 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방적 증여 관계에서 과연 양자 간의 수평적 연대가 가능할까? 되갚을 능력 없이 일방적 증여 관계에 편입된 ‘받는 자’가 갖게 되는 부담감과 무력감은 빈곤 퇴치 활동의 주 무대가 된 저개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된다. 문제는 이러한 고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민들은 비대칭적 증여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민들이 대규모 원조를 단번에 뿌리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한편 비대칭적 증여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것은 빈곤에 대한 개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빈곤에 대한 개입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한 실무 과정을 담당하는 이들의 역할이 교류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는 ‘빈곤 산업’(poverty industry)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문제는 빈곤 산업이 그 종사자들의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주고, 마치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애초의 빈민 구제라는 순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립되었던 국제적 네트워크나 조직 등이 그 자체의 유지나 확장을 위해 빈민 구제를 내세우는 본말 전도의 형국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미 ‘주는’ 역할이 직업이 된 ‘빈곤 산업’의 실무자가 거대한 ‘빈곤 산업’의 그물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빈곤 개입의 문제에 대한 학계와 정부 기관, 민간 단체의 비판은 ‘빈곤 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받는 자’의 ‘원조 의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서구 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2조 3천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스스로 사회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빈곤 지역을 선별하여 원조하거나 좀 더 효율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빈곤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걸맞

은 원조 방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① 이러한 원조 방식은 흔한 비유대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빈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 원조의 역할을 부수적인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앞서 ‘주는 자’가 주도하는 ‘빈곤 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가져온 구조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빈민들이 잡을 물고기가 과연 남아 있거나 한가? 자기 어장을 뺏긴 사람들에게 낚싯대를 쥐어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문은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일방적 증여 관계가 고착된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국제정치적 편제 구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빈곤 산업’은 빈민들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은폐하거나 고착한다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 준다.

<독해>

빈곤에 대한 국제적 개입: 개발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개발 원조를 통해 돕는 방식  
 ↓(그러나, 글의 흐름 변화)  
 빈곤에 대응이 글로벌화

<예측>

비교 대조(글로벌화 된 빈곤 대응 vs 기존의 개발 원조)와  
 논증(글로벌화 된 빈곤 대응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이 이 글을 이끌어 가는 주요한 기준점

<이후 독해>

실제 뒤 글은 문제 해결 구조 자체는 맞으나 다른 구조  
 빠르게 반응하기  
 활동 주체의 다양성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지만  
 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억압적 증여 관계  
 주는 자 중심의 관계 ⇒ 수평적 연대x  
 부담감과 무력감, 비대칭적 증여 관계 등의 문제가 등장  
 이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해야 한다  
 이것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논증이다

실무자에게도 문제, 실무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범범이 됨 ⇒ 빈곤 산업  
 빈곤 산업이 실무자와 종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양상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가 이미 그들의 직업 ⇒ 끊어내기가 어렵음

그런데(전환, 새로운 화제)

받는 자의 원조 의존성에 중점 즉 문제로 제시된 둘 중에 전자를 선택  
 임파워먼트 논의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즉 그들이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부담감과 무력감 등에 대한 선행 이해가 된다(과반이도)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후자의 원인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미 주는 산업의 구조 하에서 빈민들은 고착화되고 이를 만드는 더 근원적인 구조가 은폐되는 것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 매체의 발달에 따라 빈곤에 대한 대응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 ② 전지구화에 따라 빈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규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식민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개발 원조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이어졌다.
- ④ ‘임파워먼트’에 대한 논의는 원조 의존성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 ⑤ 빈곤에 대한 개입이 다각화되면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비대칭적 증여 관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답: 5번/ 3문단/ 빈곤에 대한 개입이 다각화되는 것은 맞으나 비대칭적 증여 관계는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서술이 중요하다.

선지/ 근거:

1번- 1문단/ 인터넷 등의 매체의 발달을 통해서 빈곤에 대한 대응 양상이 글로벌하게 변화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번- 2문단/ 글로벌화에 따라서 빈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확대되고 있고 활동 주체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있다

3번- 1문단/ 재편되었다고 했으며 이것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서는 잠시 고민했다, 다만 다시 만들어졌다는 점과 배경지식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4번- 4문단/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해는 원조 의존성의 문제와 이에 대한 반성 즉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글쓴이의 문제의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빈곤이 일어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빈곤의 양산과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② 현재 전 지구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빈곤 퇴치 활동이 산업화되어 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 ③ 빈곤 퇴치 활동의 대상이 되는 저개발 지역 주민들과 원조 제공자 사이의 억압적 증여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④ 전 지구적 차원의 빈민 구제 사업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데 대한 원인과 책임은 부유한 ‘주는 자’와 빈곤한 ‘받는 자’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있다.
- ⑤ 전 지구적 차원의 반(反)빈곤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은 ‘받는 자’의 자생력을 키울 기반을 ‘주는 자’가 이미 빼앗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답: 4번/ 결국 글로벌화 된 원조에서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글로벌화된 구조에서 비대칭적인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화 자체보다는 전지구적 빈민 구제에서의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고착화가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도 결국 주는 자가 주도하는 빈민산업의 확대가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주는 자에게 더 초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지/ 근거:

1번- 5문단/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고착화시킬 수 있는 빈민 산업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다

2번- 5문단

3번- 2문단/ 이러한 억압적 증여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민 산업에 관한 명백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번- 5문단/ 마지막의 근본적인 문제를 은연한다고 했으며 이는 결국 물고기가 남아 있는가와 연 결된다. 즉 그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주는 자에게 빼앗겨 있으며 동시에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이러한 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빈민들은 이 구조 속에서 계속 재생산 된다고 보는 것이다.

9. ㉠에 해당하는 사례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중앙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에게 주식인 옥수수보다 수확량이 더 많은 밀을 재배하도록 홍보하고 개량된 다수확 밀 품종을 보급한다.
- ② 빈곤 퇴치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짐바브웨보다 광물 자원의 판매 수입을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보츠와나에 원조를 집중한다.
- ③ 빈민 구제 활동을 자생적으로 펼쳐 온 태국의 사원(寺院)을 국제 원조 기구가 지원하여 빈민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및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④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돈을 빌려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서민 금융으로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의 소액 대출 사업을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⑤ 빈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지닌 적극적인 경제 활동 주체가 될 가능성을 보여 준 인도의 저소득층 시장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판단의 근거는 주로 앞뒤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조 의존성을 줄이기, 스스로 사회경제적, 정치적 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방법, 스스로 해결

원조는 부수적

답: 3번- 스스로는 맞으나 빈민의 해결 가능성과는 연결되지 어렵다. 결국 빈곤을 돕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키울 뿐이다.

선지/ 근거:

1번- 스스로 해결 판단

2번- 스스로 해결 효율적

4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 도움

5번- 효율적인 방식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제 해결 비교 대조

계약의 본질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보는 사비니 이래의 **근대적인 계약 이해 방식**에 따르면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스스로가 그 계약 내용의 실현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령 계약 당사자들이 민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의 실현을 자발적으로 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계약도 그들을 구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당사자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어긋나는 내용의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근대적인 계약 이해 방식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많은 경우 법률가들은 계약을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 무효인 까닭은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만족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딜레마를 이루는 두 축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근대적인 계약 이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

의사표시 이론의 논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사주의적 관점’은 계약의 핵심을 어디까지나 의사의 합치에서 찾으려 한다. 이에 따르면 내심의 의사 내용과 외부로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표시된 내용만을 믿고 거래에 응한 상대방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내심의 의사 내용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적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표시주의적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와 거래질서의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법적 추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역시 ‘표시된 바에 의할 때’ 당사자들이 그 내용의 실현을 원했다는 점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당사자들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가보다는 법이 무엇을 승인했는가 더 중요하다는 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계약을 이해하는 기존의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에 따른 책임의 본질을 의사의 내용에 기초한 책임(약정 책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책임(법정 책임)일 뿐이라고 보려는 ‘급진적 관점’의 도래를 예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이른바 ‘계약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이해하는 방식의 이와 같은 변화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발달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대적 법제는 중세의 신분적 제약을 타파하고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자신이 처하게 될 법률 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선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단지 형식적인 전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반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는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한쪽 당사자의 의사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현한 각종 규제 입법들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들이 표면적으로 동의했던 바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바를 강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해>

사비니: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봄 스스로가 원했음

민법과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측>

서로 원하거나 하나 민법과 다른 것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

민법과 같다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내세울지 등이 등장해야 한다

즉 이런 부분과 관련한 ‘논증’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

<이후 독해>

계약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해

동시에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반은 기각해야 하는 것으로 서술

딜레마의 두 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즉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제기

‘의사표시 이론’에도 적용(반응)

계약의 핵심: 의사의 합치= 내심과 외부 표시가 다른면 내심의 의사 내용에 따르기

아니나 같이 중요하다 이는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것의 구분, 표시주의적 관점, 표시된 바에 의할 때 그 내용의 실현을 원하는 것

법이 무엇을 승인했는가 더 중요, 계약의 특성

의사의 내용에 기초한 약정 책임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책임일 뿐이라는 급진적 관점을 유도할 수 있음

계속 해서 이항대립의 구조가 이어지는 것,

다) 숨겨진 내용과 전제까지 살피는 추가정리까지 가자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의사의 내용 강조와 표시된 법의 내용의 대립이 중요하며

둘 다의 인정에서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더욱더 쏠린 내용을 사실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계약이라는 것의 죽음 그 본질이었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근대적 법제 하, 위상의 차이 자유로운 계약 => 종속을 야기 -> 실질적 목표로 삼아야

이러한 과정들에서 표면적으로 동의했던 바에 구속력을 기각할 수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강제할 수도, 특히 구속력 기각은 처음 문제에 대한 논증이자 답변이다.

10.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의사주의적 관점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 ② 의사주의적 관점은 의사표시의 주체에게 자신의 의사와 일치된 표시를 할 부담을 부과한다.
- ③ 표시주의적 관점은 의사표시의 주체보다는 그 의사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한다.
- ④ 표시주의적 관점은 의사주의적 관점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 ⑤ 급진적 관점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법정 책임의 일종으로 보고자 한다.

답: 2번/ 3문단/ 의사주의적 관점에서 둘이 다를 수 있으며 다만 이때는 내심의 의사 내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선지/ 근거:

1번- 1문단&5문단/ 의사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를 말하고 있다 이는 우선 이것이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하기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권리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3번- 3문단/ 표시주의적 관점에서 외부로 표시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4번- 3문단&5문단/ 보호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중속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번- 4문단/ 급진적 관점은 책임을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설정하기에 적절하다

11. 근대적인 계약 이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ㄴ. 계약의 자유라는 문제에 비해 계약의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ㄷ. 규제 입법을 통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ㄱ에 대한 이해 문제와 유사한 구조이기에 판단의 근거를 우선 찾고 넘어가기

이의 문제점이기에 상대방의 피해, 중속 등이 존재할 수가 있다

답: 4번

선지/ 근거:

ㄱ-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ㄴ- 자유로운 의사 합치라는 점에서 가능하다, 계약의 공정성은 결국 중속적인 계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ㄷ- 중속의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즉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강제하는 등의 개입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부분과는 반대되기에 적절하다

1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 A~E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시세에 따라 m<sup>2</sup>당 10만원에 팔고자 하였으나,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당 10만원에 팔고자 한다고 말하였다(1평은 3.3m<sup>2</sup>). 을은 평당 10만원의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A: 갑은 평당 10만원에 팔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평당 10만원에 토지를 넘겨줄 의무는 없다.

B: 을은 갑이 평당 10만원에 팔고자 한다는 말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m<sup>2</sup>당 10만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C: 갑은 평당 10만원에 팔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 가격에 팔아야 한다.

D: 갑이 평당 10만원에 팔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그 가격에 토지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

E: 을은 평당 10만원의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폭리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 ① A는 의사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 ② B는 표시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 ③ C는 표시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 ④ D는 의사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 ⑤ E는 급진적 관점에 부합한다.

보기문제는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 글의 관점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즉 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전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갑과 을은 같은 결론을 표시한 것, 갑의 실수 을은 원래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

의사주의적은 초기의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연결

표시주의적은 계약의 성립을 강조

답: 5번/ 급진적 관점을 계약에 따른 책임을 법률의 규정에 기반한다고 했기에 계약 내용이 그러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다면 그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은 급진적 관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지/ 근거:

1번: 결국 초기의 의사 내용을 중시하고 있기에 의사주의적 관점이 적절하다.

2번: 드러난 계약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적절하다

3번: 결론으로 드러난 계약을 따라야 함을 의미하기에 적절하다

4번: 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의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에 적절하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해결 비교 대조

고려 말에는 관료들이 동시에 여러 처를 두는 경우나 처와 첩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토지나 봉작(封爵) 등을 누가 받을 것인가를 두고 친족 사이에 소송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성리학적 가족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혼 규제 방침을 정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사헌부에서는,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니 적처와 첩의 분수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전 왕조 말에 이러한 기강이 무너졌으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혼서(婚書)의 유무와 혼례식 여부로 처와 첩을 구분하고, 처와 첩의 지위를 바꾼 경우에는 처벌 후 원래대로 바꾸며, 처가 있는데도 다시 처를 취한 자는 처벌 후 후처를 이혼시키십시오. 만약 당사자가 이미 죽어 바꾸거나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처(先妻)를 적처로 삼아 봉작하고 토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414년(태종 14)에 대사헌 유현 등은 위규제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 수정 보완 기준을 제시하였다. “세월이 많이 지나 증빙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은의(恩義)가 깊고 앎음과 동거 여부를 고려하여, 선처와는 은의가 약하고 후처와 종신토록 같이 살았다면, 후처라도 작첩(爵牒)과 수신전(守信田)을 주고 노비는 자식에게 균분(均分)하게 하십시오. 만약 처첩의 자식들 사이에 적통을 다투는 경우에는 신분, 혼서 및 혼례를 조사하여 판결하며, 처인지 첩인지에 따라 그 자식에게 노비를 차등 분급하게 하고, 세 명의 처를 둔 경우에는 선후를 논하지 말고, 그중 종신토록 같이 산 자에게 작첩과 수신전을 주되 노비는 세 처의 자식에게 균분하게 하십시오. 영락 11년(태종 13) 3월 11일 이후부터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은 자는 엄히 징계하여 후처와 이혼시키되, 그중 드러나지 않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 자손들이 적통을 다투면 선처를 적통으로 삼으십시오.”

이상의 기준은 이후 「육전등록」에도 수록되어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아버지의 다른 처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세종 때 이담 아들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이담은 백 씨와 혼인한 상태에서 다시 이 씨에게 장가 들었다. 이는 태종 13년 이전의 일이어서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1448년(세종 30) 이 씨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백 씨의 아들인 이효손이 이 씨를 위한 상복을 입지 않자, 이 씨의 아들인 이성손이 사헌부에 고발한 것이다. 이효손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음과 같이 조정 관료들의 의견이 갈렸다.

㉢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예에는 두 명의 처를 두지 않는 것이 정도(正道)이지만, 전 왕조 말에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었으므로 한시적으로 모두 적처로 인정하였습니다. 「육전등록」에서 이미 여러 처를 인정하였으니 이효손은 이 씨를 위해서도 상복을 3년 입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육전등록」에서 여러 처를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에서 주는 작첩과 수신전은 한 사람에게 그쳤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도를 지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 씨는 선처이고 이담과 평생 동거하였으니 그 의리가 이 씨와 같지 않습니다. 이효손이 이 씨를 위해 친모와 똑같이 한다면 친모를 내치는 꼴이 될 것이므로 상복은 1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씨를 첩모로 대우하는 것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이조판서 정인지는 아뢰기를, “예에는 두 명의 처를 두지 않는데, 「육전등록」에서 은의와 동거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문란함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항구적인 법식으로는 삼을 수는 없으니, 두 아내의 아들들은 각각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만 상복을 입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경창부윤 정척은 아뢰기를, “이 씨가 이효손에게 계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전등록」상 선처·후처의 법에 의거해서 이를 계모에 견주어 상복을 3년 입고, 훗날 백 씨의 상에는 이성손이 3년을 입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어떤 이는 “이제라도 이 씨를 강등하여 첩모로 대우하여 첩모를 위한 상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 <독해>  
여러 처, 처첩의 권분이 모호⇒상복을 둘러싸고 소송 발생⇒ 중혼 규제 방침
- <예측>  
중혼 규제 방침이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지(논증)  
중혼 규제 방침이 어떻게 성리학적 가족 윤리를 확립하는지(논증)
- <이후 독해>  
1413, 혼서의 유무, 혼례식의 여부, 처첩을 원래대로, 처 이후에 또 처는 처벌 후 후처 이혼 선처가 적처  
1414 ‘수정’ 보완, 공동점과 차이점(반응)  
은의 깊고 앎음, 동거 여부, 후처와 종신토록 살고 선처와는 은의 약하면 후처에게도 작첩과 수신전, 노비는 권분  
처첩에 따라서 노비의 차등 분급  
셋 이상이면 그냥 가장 오래 산 경우에게 수신전과 작첩을 주고  
노비는 처에게 권분하기  
쉽게 처첩에서는 차이가 등장하고 있고 처첩의 위계를 보고 있다.  
1413이후에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으면 엄히 징계, 나중에 밝혀지면 선처를 적통으로 삼기  
자식이 다른 처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이슈에 대한 해결책 요구가 등장함  
이슈에 대한 것 즉 성리학적 가족 윤리를 어떻게 확립하는지에 대한 논증이 등장하게 되는 것  
선처의 아들이 후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처로 인정하고 상복을 3년, 한시적 적처로 모두 인정했음  
vs  
선처 후처, 한 명에게 작첩과 수신전을 준 것을 고려하기  
백씨는 은의가 약하고 이씨와 평생을 삼, (여기서 이미 상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국 각기 자기의 어머니만 은의와 오래 삼 이게 잘못된 기준,  
아니다 계모에 견주어서 처리하자  
아니다 첩모로 이제라도 내리자

13.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에서는 처와 첩을 구분할 때 생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 ② ㉡에서는 처인지 첩인지에 따라 그 자식들에게 노비를 차등 분급 하였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처를 첩으로 바꾸거나 첩을 처로 바꾸면 처벌을 받았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다처일 경우 모든 처와 이혼해야 하였다.
- ⑤ ㉠과 ㉡ 모두에서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부터 은의와 동거 여부를 중혼 허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판단의 근거 앞뒤에 존재한다는 것

답: 2번/ 3문단/ 처첩의 구분에 따라서 노비를 차등 배분한다. 다만 처첩의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노비를 균등 배분한다.

선지/ 근거:

1번- 2문단/ 생사의 기준이 아니며 혼서의 유무와 혼례식 여부로 처와 첩을 구분한다

3번- 2문단/ ㉠은 ㉡의 수정 조건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그리고 ㉠에서는 처첩을 바꾸는 것은 처 별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4번- 2문단/ 기본적으로 죽어 바깥이나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처를 적처로 삼아 봉작하고 토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의 경우에는 다처일 경우 선처와 후처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5번- 2문3문단/ 모두 이혼부터의 중혼을 규제하는 것이며 다만 이 중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히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서 나누는 것이다.

14.㉠~㉢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논리에 따르면 이성손은 백 씨 사후에 백 씨를 위해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
- ② ㉡의 논리에 따르면 아버지의 적처라도 경우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대우에 대한 판단이 달라야 한다.
- ③ ㉡와 ㉢ 중 어느 쪽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백 씨와 이 씨는 모두 적처로 인정된다.
- ④ ㉢와 ㉣ 중 어느 쪽의 논리를 따르는지에 따라 이효손이 이 씨를 위해 상복을 입는 여부가 달라진다.
- ⑤ ㉣와 ㉤ 중 어느 쪽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이효손은 이 씨를 위해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판단의 근거 마찬가지로 앞뒤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답: 5번/ 우선 ㉠의 계모에 견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상복을 입어야 하며 ㉡의 경우에는 첩으로 대우하여 첩모를 위한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선지/ 근거:

1번- 5문단/ 모두 적처로 인정했다고 등장하기에 이성손은 백 씨 사후에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

2번- 6문단/ 첩모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다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적절하다

3번- 7문단/ 모두 유전성종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만 이런 것들의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백 씨와 이 씨 모두 적처라고는 할 수 없다(처음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했음)

4번- 7문단&8문단/ ㉢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모만 입으면 된다고 했으며 ㉣의 입장에서는 계모까지 아닌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것 즉 적처의 대우를 해야한다고 했기에 입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5.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415년(태종 15) 박일룡은 자신의 어머니를 적처로 인정하고 자신을 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訴)를 제기하였다. 그의 아버지 박길동은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로, 1390년(고려 공양왕 2) 상인(商人) 노덕만의 서녀(庶女)인 노 씨를 혼례 없이 들여 박일룡을 낳았다. 이후 박길동은 1395년(태조 4) 현감 김거정의 딸인 김 씨와 혼서를 교환하고 혼례를 거친 후 그 사이에 박일룡을 낳았다. 한편 김 씨와 혼인한 상태에서 1402년 대사헌 허생의 딸인 허 씨와 혼서를 교환하고 혼례를 거친 후 그 사이에 박삼룡을 낳았다. 김 씨는 친정인 창녕에 거주하였으며, 박길동은 허 씨와 한양에서 평생 동거하였다. 박일룡과 박삼룡 모두 어려서, 집안의 큰일은 처아들인 박일룡이 실질적으로 도맡았다. 1413년 5월 박길동이 죽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일룡이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 ① 박길동 사망 직후에 소가 제기되어 그 해에 판결되었다면, 작첩과 수신전은 김 씨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 ② 박길동이 소가 제기될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해도 중혼에 대해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③ 박일룡이 집안의 일을 주관하는 아들이라는 점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이 소송에서 작첩과 수신전은 은의나 동거 여부를 따져 허 씨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 ⑤ 이 소송에서는 세 명의 처를 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다.

보기는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 윗글의 관점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것

이미 이전의 일 서녀와 혼례 없이 낳음

혼서 교환 혼례 거친 후 박일룡

혼서 혼례 거친 후에 다시 낳음, 박삼룡

이제 처첩의 경우 첩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혼례가 없기에

다만 나머지 둘은 선처와 후처 대신에 자녀들은 균등배분이 가능할 수 있고 작첩과 수신전은 처첩이 가능하다.

답: 5번/ 2문3문단/ 혼례가 없었기에 첩 하나와 처 둘로 볼 수 있다. 뒤에는 수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기준이다

선지/ 근거:

1번- 2문단/ 1413년에는 선처를 적처로 삼는다

2번- 3문단/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뒤에 등장하는 이 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3번- 글 전체/ 집안일은 해결책의 기준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4번- 3문단/ 은의와 산 기간을 고려해서 후처가 작첩과 수신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과 문제 해결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1935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2년간의 이야기로, 궁핍화가 극에 달해 연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현실을 중요한 문제로 삼은 작품이다. 그런데 채만식이 「탁류」에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대한 작가의 민감한 시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토착적 시스템의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다가 식민지적 상황 때문에 더욱더 굴곡진 수많은 우여곡절에 주목하였다. 채만식의 민감한 시선은 「탁류」에서 집중적으로 그려진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과 사물을 환금의 가능성으로만 파악하는 자본주의의 기제가 인간의 순수한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이윤 추구의 원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초봉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태수는 그런 초봉에게 끊임없이 베풀면서 초봉을 그녀의 ㉠ 고유한 영토로부터 끌어낸다. 그런 베풀음을 순수 증여라고 해도 될까. 아니, 꽤나 검은 의도를 숨기고 행한 증여이니 그것은 사악한 증여라고 해야 할 터이다. 하여간 태수는 끊임없이 증여하고 선물을 하면서 초봉의 고유한 모럴,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조금씩 무언가를 축적해 가는 삶의 방식을 회의에 빠뜨린다. 그리고 그 증여 행위를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초봉의 호의적인 시선을 얻어낸다. 하지만 그 순간이란 ㉡ 하나의 변곡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초봉에게 증여한 것의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초봉을 타락한 교환가치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초봉이 교환의 정치경제학에 익숙해질 무렵, 제호가 초봉에게 접근한다. 제호는 객관적인 지표로 가지고 초봉의 육체를 돈으로 측량하고 그와의 거래를 제안한다. 초봉 또한 제호가 자신의 상품성을 그만큼 높게 봐 주자 이 거래를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비록 그 교환이 서로 간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어도 이 거래 이후로 초봉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초봉에게 정보가 나타나 초봉과 송희 모녀의 호감을 구실로 가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잉여의 성적 착취를 반복한다. 정보는 이 타락한 사회에 동화된 초봉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초봉의 거부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초봉의 몰락’은 이렇듯 초봉이 교환의 정치경제학을 자기화함으로써 ㉢ 영혼이 없는 자동인형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봉은 아버지 정주사가 미두\*로 일확천금을 꿈꾸듯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어 나갔다. 자신에 대한 착취에 강렬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특히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기제의 ㉣ 노회함과 집요함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탁류」에는 추악한 세상의 탁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채만식은 「탁류」에서 그 특유의 냉정한 태도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삶의 양태들을 냉소하고 풍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의 형식 혹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능케 할

잠재적 가능성이나 가치들을 끈질기게 탐색해 내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란다.”라는 ㉤ 휠덜린의 말을 좀 뒤집어 말하자면, 「탁류」가 세상을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위험 속에 같이 자라는 구원의 힘을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이리라. 그 구원의 가능성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초봉이 형보를 죽였다는 점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탁류」에는 개념의 위계를 갖춰 계기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나 타락한 교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딸 송희를 낳으면서 초봉이 어머니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자유주의자이자 냉소주의자인 계봉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철칙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승재가 남에게 그저 베풀려고 하는 것도 모두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들 중에서도 초봉과 승재의 삶에서 드러나는 증여의 삶은 「탁류」가 타락한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우리는 ‘증여의 윤리’라고 부를 수 있을 터이다.

\* 미두(米豆): 미곡의 시체를 이용하여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

- <독해>
-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 vs 토착적 시스템의 갈등 식민지의 상황 => 굴곡진 삶
- 초봉 역시 이러한 삶을 드러내는 것
- 환금의 가능성으로만 파악 => 순수한 영혼 잠식 => 이윤 추구의 원리가 확대 재생산
- <어측>
- 환금 가능성이 순수한 영혼을 잠식하고 이러한 이윤 추구의 원리가 확대 재생산되는 초봉의 굴곡진 삶에 대한 설명과(인과)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논증)
- 죽 문제 해결의 구조를 글로 읽어야 한다
- <이후 독해>
- 끊임없이 베풀 => 기존의 모럴에 회의 => 무엇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 타락한 교환가치의 세계로 편입
- 객관적인 지표로 육체를 측량
- 이 부분이 바로 모든 것을 환금 가능성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교환의 경제로 들어가는 것
- 이렇게 되면 순수한 영혼이 잠식되는 것이다
- 상품으로 전락
- 잉여의 성적 착취도 발생
- 결국 교환의 정치 경제학의 작화 => 영혼이 없는 자동 인형
- 강렬한 거부감이 있었어도 결국, 자기 자신 자신의 몸도 상품화 함
- 가능성과 가치를 탐색, 즉 도덕이 예시했던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
- 위험 속에서의 구원의 힘, 단순하게 죽duTE는 것 이상, 이것도 포함되어 있음
- 타락한 교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
- 일하는 만큼 얻어야 한다. 그저 베푸는 것, 증여의 삶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삶의 양태에 대한 소설가의 비판적 인식을 추적한다.
- ②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소설가의 내면 심리를 천착한다.
- ③ 궁핍으로 인한 연명의 문제보다 윤리의 문제를 중시한 소설가의 인식을 비판한다.
- ④ 인간의 존재론적 모순에 대한 소설가의 염세적 시선에 주목하여 삶의 의미를 반추한다.
- ⑤ 현실을 대하는 소설가의 이중적 태도를 인물들이 표방하는 이념의 분석을 통해 통찰한다.

답: 1번 / 문단/식민지 근대화 시기에서 드러난 삶의 양태 즉 자본주의 기제가 순수한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이윤 추구의 원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근거:

2번-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물의 심리의 경우 소설가의 내면 심리를 천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인물의 내면 심리나 소설가의 내면 심리 등이 드러나는 것은 맞다

3번- 문단&5문단/ 오히려 윤리의 문제를 경시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4번- 5문단/ 소설가의 비판적인 시선이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희망과 해결의 시선도 존재한다 따라서 염세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순적인 인식은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이 대립적인 어휘를 나열한 점에서 일부 약한 모순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

5번- 5문단/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동시에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중적 태도를 뽑아낼 수는 있다 다만 이것을 인물들이 표방하는 이념으로 드러낸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17. '초봉'의 몰락 과정과 관련하여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본주의 기제로부터 영향을 받기 이전에 가족에 대한 증여자로서 '초봉'이 지녔던 순수한 영혼을 환기한다.
- ② ㉡은 '초봉'이 노동에 의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으면서 교환의 정치경제학이라는 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 ③ ㉢은 '초봉'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인간과 사물을 환금의 가능성으로만 파악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은 '초봉'의 몰락 과정이 순진성의 세계를 끈덕지고도 교활하게 파괴하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과 상통함을 보여 준다.
- ⑤ ㉤은 구원의 힘이 역설적 방식으로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날 힘이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 생성되어 가기도 함을 시사해 준다.

답: 2번 / 2문단/ 우선 노동에 의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 근거:

1번- 2문단&5문단/ 이때는 교환의 논리이전이며 순수하게 희생하는 것으로 증여자이자 순수한 영혼 해석할 수 있다

3번- 3문단&4문단/ 우선 교환의 경제에 익숙해진 것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 것 모든 것을 환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번- 문단&4문단/ 결국 그를 이러한 교환의 세계 환금성으로 가득한 세계로 바꾼 것은 식민지의 근대화와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번- 5문단/ 초봉이 평생을 죽었다는 것도 이러한 부활의 극복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교환 질서 밖으로 나가는 증여의 가능성에도 등장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계봉이는 승재가 오늘도 아침에 밥을 못 하는 눈치를 알고 가서, 더구나 방세가 밀리기는커녕 이달 오월 치까지 지나간 사월달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돈을 내놓는 것인 줄 잘 알고 있다.

계봉이는 승재의 그렇듯 근경 있는 마음자리가 고맙고, 고마울 뿐 아니라 이상스럽게 기뻐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굴이 곳곳하게 들러지지 않을 것같이 무색하기도 했다.

“이게 어인 돈이고?”

계봉이는 돈을 받는 대신 뒷짐을 지고 서서 준절히 묻는다.

“그냥 거저…….”

“그냥 거저라니? 방세가 이대지 많을 리는 없을 것이고…….”

“방세구 무엇이구 거저, 웅색하신데 쓰시라구…….”

계봉이는 인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까딱까딱하더니, “나는 이 돈 받을 수 없소.”

하고는 입술을 짝 다문다. 장난옛말로 듣기에는 음성이 너무 강경했다.

승재는 의아해서 계봉이의 얼굴을 찡찡이 건너다본다. 미상불, 여전한 장난꾸러기 얼굴 그대로는 그대로지만, 그러한 중에도 어디라 없이 기색이 달라진 게, 일종 오만한 빛이 드리났음을 볼 수가 있었다.

승재는 분명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혹시 나의 뜻을 무슨 불순한 사심인 줄 오해나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비록 마음이야 답답하지만 일이 좀 창피한 것도 같았다. (중략)

계봉이는 문제된 오 원짜리 지전을 내려다본다. 아무리 웃고 말았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집어 들고 들어가기가 좀 안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종시 안 가지고 가기는 더 안되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집어 든다.

- 채만식, 「탁류」 -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딱 한 만큼만 받아갔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선지/ 근거:

1번- 보기와 글에서 파악할 수 있다

2번- 추악한 자본주의의 기제를 제도의 속물주의적 논리와 연결시킬 수 있고 승재는 자신의 증여를 보 여주고 있다

4번- 5문단/ 승재의 증여는 무엇을 원하는 증여가 아니기에 타락한 교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5번- 2문단& 5문단/ 초봉에 대한 서술에서 알 수 있듯 변화된 가치로 끌어 당겨져서 이렇게 볼 때

- ① 초봉을 전락시킨 돈은 이윤 추구 원리의 작동, 승재가 계봉에게 건네는 ‘돈’은 순수 증여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호는 속물주의적 논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승재는 ‘마음’의 가치를 통하여 자신의 선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형보는 돈의 위력을 믿고 초봉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봉은 자존심 때문에 ‘근경 있는 마음자리’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④ 태수의 과잉 증여와는 달리, 승재의 증여는 대가를 바라는 ‘불순한 사심’을 지니지 않은 것이기에 타락한 교환 세계에서 벗어날 희망의 표지로 볼 수 있겠군.
- ⑤ 교환의 정치경제학을 무의식적으로 자기화한 초봉과는 달리, ‘입술’을 짝 다무는 계봉의 모습은 ‘증여의 윤리’를 의식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는 글의 핵심 개념, 윗글의 관점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승재는 증여를 보여준다 재봉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교환의 논리를 생각

답: 3번/ 재봉 역시 타락한 교환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이며 이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받고자 하는 마음과 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 모두를 지닌다고 보기에 어렵이 있다. 오히려 타락한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과 논증(문제 해결)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대표자에게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관료 또는 기타 독립 기구에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는 연쇄적인 권한의 위임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그런데 후자의 위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왜 후자와 같은 위임 행위가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 기능주의 이론은 주인-대리인 모델에 의거하여 답한다. 주인, 즉 정치 행위자들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정보의 불완전성과 집합 행동의 딜레마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는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거래 비용에 정보 비용과 신뢰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둘로 나뉜다. 위임을 전문 지식과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 정보의 논리와, 위임을 주인들의 집합 행동의 딜레마, 즉 주인들이 상호 불신으로 인해 전체의 합의에 따른 공동의 장기적 이익 대신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해하는 ㉡ 신뢰의 논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권한 위임에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해 행동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위임의 문제는 대리인에게 기대하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대리인의 배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이때 두 논리의 해법은 상이하다. 정보의 논리는 대리인이 더 많은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질수록, 또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할수록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고 본다. 반면 신뢰의 논리는 주인들로부터 독립된 선호를 가진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위임은 주인들의 집합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두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정보의 논리는 대리인의 선호와 배반이 사후적으로만 관찰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신뢰의 논리는 주인들이 단기적 선호를 포기하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집합 행동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따라서 위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능주의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은 위임의 설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위임을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배의 갈등에 기초한 정치적 경쟁의 산물로 이해한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어떤 정치 행위자도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안정적으로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정책이 미래의 정치 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하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해당 정책을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과 각축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다. 위임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 비용, 즉 '정치적 거래 비용'이 창출된다. 정치적 거래 비용이란 대리인에게 위임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데, 이 비용이 커질수

록 대리인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책이 역전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정치적 거래 비용을 매개로 한 위임의 제도적 설계는 정치 행위자들에게 정책의 안정성과 대리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 간의 맞교환을 요구한다. 위임을 설계하는 세력은 대리인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정책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적 거래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대리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게 된다.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각축하는 정치 세력들 사이의 정책 선호의 차이가 현저할수록, 그리고 정치 권력 교체가 빈번하거나 경합을 벌이는 정치 세력이 다수일수록,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지고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정치적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은 위임을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분리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얻는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추동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독해>

대의 민주주의: 연쇄적인 권한의 위임에 기초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창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

<예측>

처음부터 문제 해결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연쇄적인 권한의 위임의 전제는 무엇일까 (개념 or 논증)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증)

<이후 독해>

기능주의 이론의 주인-대리인 모델, 이것의 개념

이것이 결국 위임의 전제

거래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

거래 비용: 정보 비용 VS 신뢰 비용

전문 지식의 부족 VS 장기적인 이익의 추구로 나뉘어본다

그런데(다른 화제)

대리인의 견제에는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더 많은 전문 지식, 정보의 습득, 선호의 일치 더 많은 권한 VS 독립에 더 많은 권한

하지만(상반된 내용)

(선호와 배반의 관측 → 사후적) ⇒ 위임 단계에서의 적용 x

신뢰의 논리: 단기적 선호의 포기 가능, 이 자체가 집합의 문제가 x

따라서 절차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

이게 결국의 연쇄적인 권한의 위임을 설명하는 '불바른' 전제

위임의 설계 과정에서의 경쟁과 갈등에 주목

민주주의는 권력이 안정적이지x ⇒ 미래 권력에 의해서 변화 가능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간섭과 각축에서 분리 독립& 정치적 거래 비용의 발생

정치적 거래 비용 ↑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움

결국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나, 정치적 거래 비용의 증가 ⇒ 통제 가능성을 분리  
경합을 벌이는 정치 세력이 다수 ⇒ 정책이 바뀔 가능성 높아짐 ⇒ 정치적 거래 비용의 증가

c) 과반이도 정치

어려운 말은 쉽게 바꾸보기

정치적 권력 교체가 너무나도 잦은 곳이라면 어떻게 처리

독립적인 위원회 등을 만들고 이들에 맡기기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만드는 비용 이들을 구성하는 과정

이들의 결정이나 구성을 바꾸는 것이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특히 정치 권력이 빈번하게 교체된다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 거래 비용이 커지게 되면 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정책은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19. '위임'에 대한 위 글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임은 정치적 경쟁 구조의 산물이다.
- ② 위임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 ③ 위임을 주인-대리인 모델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④ 위임은 정치적 거래 비용의 절감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 ⑤ 위임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방식이지만 그 원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답: 4번/ 5문단/ 위임의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정치적 거래 비용이  
클수록 정책의 역전 가능성이 낮아진다

선지/ 근거:

1번- 5문단/ 위임은 정치적 경쟁 구조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2번- 5문단/ 정치적 불확실성 즉 변화가능성에서 위임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 비  
용이 발생하게 된다

3번- 4문단/ 사후적인 분석이라는 관점과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이 있어서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이 등장한다

5번- 1문단/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원리와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선호하는 결과를 낳기 위한 주인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할수록 대리인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된다고 본다.
- ② ㉡은 주인들 각자의 단기적 이익과 공동의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한다고 본다.
- ③ ㉠과 ㉡ 모두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 기초하지만, 거래 비용의 상이한 측면에 주목한다.
- ④ ㉠과 ㉡ 모두 위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치적 경쟁 속에 있는 정치 행위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배반과 ㉡에서 발생하는 집합 행동의 딜레마는 위임 설계 후에 확인된다.

답: 5번/ 4문단 ㉠은 적절하나 ㉡은 적절하지 않다. 오리게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선지/ 근거:

1번- 3문단/ 주인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대리인의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될 수 있  
며 기본적으로 주인들의 전문 지식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2번- 2문단/ 그대로 등장한다

3번- 2문단/ 모두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공동점을 지녔다 다만 거래 비용의 다른 내용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4번- 4&5문단/ 모두 경쟁과 갈등이 집중하는 정치적 경쟁 그리고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라는 구  
분된다.

21.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을 적용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통화 정책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그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갖는 장기적인 효용에 대해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통화 팽창을 통해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② 각국의 정치 행위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에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그들 간의 정책적 선호의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된 일정한 재량권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책 선호의 불일치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설계 단계에서 의회 내 세력 변화 가능성이라는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 ④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의 통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이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결핍을 야기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결과이다.
- ⑤ 국제 협력을 위한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할 때는 국내 반대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협상 의제에 포함한다. 이는 국내 반대자들의 반론으로 인한 논란을 예방하여 국제 협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판단의 근거를 우선 앞뒤에서 찾고 다음을 읽는 것이 좋다

위임, 경쟁, 갈등, 정치적 거래 비용의 발생, 빠르게 교체되면 거래 비용의 증가

이렇게 커지면 바꾸기가 어렵음

답: 1번/ 위임인데 장단기 이익은 신뢰의 본리와 연결되는 것이다

선지/ 근거:

2번- 정책의 선호 차이,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번- 세력 변화 가능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번- 정치 행위자의 간섭 즉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의미한다

5번- 갈등과 이어지는 것이며 이 밖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증 비교 대조

재현적 회화란 사물의 외관을 실제 대상과 닮게 묘사하여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음악은 어떨까? 회화가 재현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음악도 가져야 재현적 음악이 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모든 음악은 결코 대상을 재현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가.

흔히 논의되는 회화적 재현의 핵심적 조건은 **그림의 지각 경험과 그림에 재현된 대상을 실제로 지각할 때의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은 음악 작품의 이른바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이 재현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데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재현한 회화에서 재현된 대상인 사과는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림 속에서 인식이 가능하데, 음악의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은 재현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다를 재현했다고 하는 드뷔시의 <바다>의 경우라도, **표제적 제목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감상자는 이 곡을 바다의 재현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화되기 어렵다. 모래 해안의 일부를 극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재현적 회화이지만 그 제목을 모르면 비재현적으로 보이기 십상일 것이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의 경우, 제목을 알 때 감상자는 그림에 그려진 선과 칠해진 면을 뉴욕 거리를 내려다 본 평면도로 볼 수 있지만 제목을 모를 때는 추상화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화적 재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같은 사례는 비전형적인 반면 음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물론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 같은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될까? 작품에서 제목이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음악 작품의 가사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본다. ㉠이 입장을 근거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이 제목의 도움 없이도 인식 가능해야만 재현이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제목이 작품의 일부인 한, 예술 작품의 재현성은 제목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반주 음형은 제목과 더불어 감상될 때 물레의 반복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들린다.

음악이 재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작품 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재현적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재현적이라 일컬어지는 음악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감상자는 작품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상자는 <바다>가 바다의 재현으로서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이 곡을 이루는

음의 조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바다>를 음악적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제시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나 표제가 무시된 채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이 고려된다면 작품의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제적 제목과 주제를 알지 못하는 감상자는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에서 왜 '프랑스 국가'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의 말미에 왜 '단두대로의 행진'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이들 작품에서 그러한 요소들의 출현을 설명해 줄 순수하게 음악적인 근거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음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독해의 기본: 예측하거나 새롭게 만나는 스키마는 즉각적으로 정리하기

<독해>

보고 딱 안다 → 재현적 음악(인과), 재현적 → 보고 딱 안다(필요)

<예측>

'논증'이 이후 글의 핵심

재현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나와야 한다

cf) 이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3 step

말은 쉽게

이미지화

숨겨진 내용도 찾아보기

<이후 독해>

재현적 조건의 필요조건이 그대로 등장하고 일반적으로

그림의 지각과 실제의 지각이 닮아야 한다는 것

그림의 지각과 실제의 지각이 닮아야 → 재현적, 재현적 → 그림의 지각과 실제의 지각이 닮아야

즉 보고 딱 알아야

그런데 표제적 제목이 필요한 것

이러한 논증에서 표제적 제목은 알아야x 딱 알아야x 즉 ~B

하지만 등장해서 이에 대한 반박의 논증들 시작한다

표제가 ~B가 아니다 재현적 그림에서도 제목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표제까지 작품의 일부로 본다. 따라서 재현적의 필요조건에 제목없이 딱 알 수 있는 것 닮은 것은 넣기가 어렵다

재현적에 대한 또 다른 이해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필요조건

음악은 재현적 대상을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기에

즉 음의 조합과 구성을 알 수 있기에 재현적이 아닌 것

그러나 이후에 반대 논증 음악도 표제나 부제 주제 즉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이해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

2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바다>는 표제적 제목 없이는 재현으로 볼 수 없다.
- ②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전원 교향곡>에서 자연의 소리를 닮은 부분은 제목과 함께 고려해야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반주 음형은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1812년 서곡>에 포함된 ‘프랑스 국가’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그 등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 풀이의 기본 목조건 선지와 연결하기 + 나중에 오답의 방식을 고려하기

3번: 3문단/ 전원 교향곡은 전형적이지 않은 사례로 등장한 것으로 제목이 없어도 전형적인 재현 즉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다

23.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①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으로 재현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악 작품이 흔히 존재한다.
- ②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옹호하려면 회화적 재현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③ 제목의 도움 없이는 재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음악과 전형적인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 ④ 음악적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악 작품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감상자가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어야 한다.
- ⑤ 재현에 대한 지각적 경험과 재현 대상에 대한 지각적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악 작품이 존재한다.

문제 풀이의 기본 목조건 선지와 연결하기 + 나중에 오답의 방식을 고려하기

5번 3문단/ 전원 교향곡의 예시가 그러하다

1번: 3문단&6문단/ 순수한 음악적 측면은 여기서 문제와 부재가 없어도 재현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전형적이지는 않다

2번: 글 전체/ 회화의 재현적 조건 즉 닮음, 즉각적 떠올림과 인식은 음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3번: 3문단/ 모두 제목의 도움 없이 재현 여부를 알 수도 있다

4번: 2 5문단&6문단/ 전형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있다는 말이 등장한다

24. <보기>에 대한 ㉠~㉣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슈만은 멘델스존의 교향곡 <스코틀랜드>를 들으면서 멘델스존의 다른 교향곡 <이탈리아>를 듣고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풍경을 떠올리며 <스코틀랜드>를 들었을 슈만은 아마도 듣고 있는 곡의 2악장의 주제에 왜 파, 솔, 라, 도, 레의 다섯 음만이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멘델스존의 의도는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의 5음 음계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 ① ㉠은 이것을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 제목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재현 대상을 몰랐더라도 곡의 전체적인 조합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③ ㉢은 5음 음계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정보가 그 곡이 교향곡으로서 지니는 순수한 음악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④ ㉣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제목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할 것이다.
- ⑤ ㉤은 이탈리아 풍경과는 이질적인 5음 음계로 인해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음악적 구조 파악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문제 풀이의 기본 목조건 선지와 연결하기 + 나중에 오답의 방식을 고려하기

보기 문제: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 글이나 보기에 관점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즉 함축된 정보에 대한 이해까지 이어진다.

결국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으로 등장한 글의 내용과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인식할지와 관련되는 것이다.

5번- 6문단/ 음악적 구조라는 말은 작품의 완전한 이해와 동치가 아니다. 여기서는 작품의 완전한 이해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해결

<1>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게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게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2>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3>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라는 의미는 아니다.

<4>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5>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

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독해: 예측하기와 채워주기 & 예측 못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  
 <독해>  
 쾌락주의의 정의/ 개념/ 구성: 쾌락 그 자체가 가치,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기,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 모든 것은 쾌락을 기준으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 중 쾌락이 아닌 것이 있다 x)  
 (어떤 것은 쾌락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x)  
 CF)  
 내재적 같은 것은 본래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함

<예측>  
 이기적 쾌락주의의 논증  
 쾌락 주의적 공리주의의 논증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후 독해>  
 그런데 즉 글의 흐름이 바뀐다. 예측하지 않은 문제 해결의 구조, 원인 결과+ 해결의 논증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 → 고통에 빠진다는 오해  
 즉 그가 추구하는 쾌락 → 단기적이고 말초적  
 반박&해결책: 추구 쾌락임에도 ~ (단기적이고 말초적)  
 순간적 감각적 방탕한 쾌락이 아님 말초적 아님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의 추구.

또한 쾌락 이외의 모든 것은 무가치 즉 쾌락만이 가치  
 가치 → 쾌락  
 해결이자 반박의 논증: 가치가 있는데 쾌락이 아닌 것, 가치 ~ 쾌락  
 실제 다양한 것을 세울 다만 이 가치는 도구적 가치, 내재적 가치 x  
 광의의 쾌락

사실이지만(세부 정보) '쾌락주의의 문제'가 등장  
 쾌락의 정의와 계산의 문제  
 서로 다른 것이 있지 않냐? 즉 따로 정의를 내리야 하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것 아냐?  
 벤담의 의견: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으로 다른 것 그래서 계산 가능하다  
 밀: 질적 차이 인정 ⇒ 비교의 문제가 발생 → 모두 경험의 기준으로 해결 ⇒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가치 기준에서 쾌락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 것

25. 위 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 ②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 ③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④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 ⑤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답: 2번/ 1문단/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 역시 쾌락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쾌락 주의의 쾌락은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선지/ 근거

1번: 1&3문단/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고통은 도구적 가치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한다.

3번: 3문단/ 도구적인 의미에서 고통이 가치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4번: 4문단/ 결국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5번: 1문단/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본다

26.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쾌락주의는 사디스트가 쾌락을 얻기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①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른 것이다.
- ②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자신의 쾌락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 ③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그른 것이다.
- ④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 ⑤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보다 그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이 더 클 경우에 가학적 행위는 그른 것이다.

보기 문제는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된다

글을 읽을 때 보기의 어디까지 받아드릴 수 있다가, 보기를 읽을 때 글의 어디까지 받아드릴 수 있는가. 즉 어떤 글을 수용할 때 어디까지 받아드릴 수 있는가

근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즉 벤담과 밀 5문단

가학적 행위도 인정하는 문제, 이것 자체가 도구적인 가치이다, 전체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이 나올 수가 있다

답: 5번/ 1&5문단/ 쾌락보다 고통이 크다는 것, 즉 전체의 쾌락을 감소하는 것이기에 적절하다.

27.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밀은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포기하였다.
-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였다.
- ③ 밀은 쾌락의 원천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④ 밀은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답: 2번/ 1문단/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되어야 한다는 말 즉 가치평가가 되었다면 쾌락만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위생 등의 다른 조건을 넣어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단순한 쾌락이 아닌 쾌락에 위생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